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대우

제 2.2 조 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3.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중고품이란 HS의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과, 사용된 후에 그 본래의 특성 또는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수리·재생·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¹⁾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5.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간 합의가 제 22.1조(공동위원회)와 자국의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때에는, 그 합의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6.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가. 각각의 연도에 대해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또는 제 23장(분쟁해결)에 따라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1) 이 항은 HS의 제8703호에 분류된 중고 차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중고 차량은 부속서 2가에 언급된 조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러한 중고 차량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 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제 3 절 특별 제도

제 2.4 조 관세면제

1. 어느 당사국도, 관세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면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세면제의 적용을 기존의 수혜자에 대해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하지 아니한다.

2. 어느 당사국도 기존의 관세면제의 지속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느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해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 상품이 일시

입국을 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은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항구를 통해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해 정해진 최초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시하면,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수입자 또는 다른 인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8. 어느 당사국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차량이나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도 자국 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입국항과 출국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해 그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국항을 통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차량 또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차량 혹은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9. 제8항의 목적상, 차량이란 트럭, 트럭 트랙터, 트랙터, 트레일러 유니

트 또는 트레일러, 기관차 또는 철도 차량 또는 그 밖의 철도 장비를 말한다.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느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2. 어느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 2.7 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각각의 그러한 광고물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 그리고 그러한 광고물 또는 포장 중 어느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제 4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의해 통합된 1994년도 GATT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함을 양해한다.

-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 다.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조제1

항에 따라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어느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규제 당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6. 제4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 29 조

수입허가

1. 어느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허가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 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그 통지는

-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²⁾

3. 어느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해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10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어느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하고 유지한다.

2) 이 호는 공표된 후 20일 내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11 조

수출세

어느 당사국도, 관세·조세 또는 부과금이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해서 도입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해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12 조

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및 그 주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해 규율된다.

제 2.13 조

관세평가

1. 관세평가협정과 이를 계승하는 모든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무역에 적용하는 관세평가규정을 규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세평가협정과 이를 계승하는 모든 협정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의 관세법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을 준수한다.

제 5 절

그 밖의 조치

제 2.14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다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와 합치하게 부속서 2다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 더 높은 수입관세 형태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더 높은 수입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다.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세율, 또는

라. 부속서 2다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3. 어느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제8장(무역구제)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또는

다. 농업협정 제5조에 따른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4.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은 그 조치의 적용에 대해 협의한다.

5. 제2.17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

6. 부속서 2다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15 조 농업 수출 보조금

어느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재도입하지 아니한다.³⁾

제 2.16 조 가격밴드제도

페루는 자국 가격밴드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부속서 2라에 열거된 상품에 대해 최고 법령 제115-2001-EF호 및 그 개정에 수립되어 있는 가격밴드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 6 절 제도 규정

3) 대한민국은 수출보조를 받은 농산물이 페루로 수출되고 있지 않으며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제 2.17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와 모든 임시작업반의 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와 페루의 통상관광부, 또는 그들 각각의 승계기관에 의해 조정된다.

2.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장,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원산지 절차) 또는 제5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및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다.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HS의 향후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항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

1) 2007년 HS의 후속 개정과 부속서 2나, 또는

2) 부속서 2나와 국가상품분류체계

라. 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양 당사국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마.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과 협조하여 이 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 그리고

바. 특정 권한을 가진 임시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1년에 최소 1회 회합한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언제라도 회합한다.

5. 양 당사국은 농수산물 무역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간 농수산물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작업반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임시작업반은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 절 정 의

제 2.18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농산물이란 농업협정 제2조에 언급된 상품을 말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

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해 필요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된 것, 또는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수출 보조금이란 농업협정 제1조마호 및 그 조항의 모든 개정에서 그러한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라 함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이 수출될 것
- 나.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 다.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
- 라.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 마. 수입 물량 또는 가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출 물량 또는 가격, 또는 외환 유입 금액과 연계하는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 바. 수입상품이 후에 수출될 것
- 사. 수입상품이 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 아. 수입상품이 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해 대체될 것, 또는
- 자. 수입상품이 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해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HS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 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